

섹션 1557: 장애를 지닌 개인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접근성 보장

섹션 1557은 Affordable Care Act(ACA, 부담적정보험법)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 섹션 1557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보건복지부)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장애를 지닌 개인 보호

- 섹션 1557은 기존 요건과 부합하면서, 해당 주체가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섹션 1557은 또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체가 대체 형식 및 수화 통역사 등 적절한 보조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해당 주체는 특히 개인의 권리 안내문을 게시해 커뮤니케이션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주체는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해당 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근본적인 개조가 필요하지 않은 한,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장애를 지닌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및 정보 기술을 통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섹션 1557은 접근 가능한 설계를 위한 2010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기준을 신규 건설 또는 개조되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기준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대다수 해당 주체의 이러한 기준 준수 요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해당 주체는 장애에 대해 차별적인 마케팅 관행이나 특혜성 설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체는, 변경으로 인해 해당 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근본적인 개조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동등한 접근권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섹션 1557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을 참조하십시오.